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9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59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

❍ 일자리박람회·채용행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신설

2.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 제공 추가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2항)

나.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가 (안 제6조제1항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가 (안 제6조 제1항 제5호)

- 개정안 요지 :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 검토의견 : 지역의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단기 고용 및 불안정한 근로 여건으로 조기 이탈 가능성이 높음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장 인력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 지자체 차원에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04. ~ 12. - 총사업비 : 350백만원【도(50%) 175,시(50%) 175】 - 지원규모 : 육아휴직 대체 인력 근로자 350명 - 지원방식 : 근로자에게 입금
지원대상	- 관내 소재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대체인력 근로자
지급내용	- 동일 사업장 계속 근로시 3개월 근속시 100만원 -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 (사업주가 아님) -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 ·중복 지원 불가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대체인력근로자에게 지급
1인당 월 초대140만원 21개월 지급 - 월 임금 80% 한도지원, 사업주 20% 부담	3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입사한 근로자

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가가에 대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 제공 근거 신설 (안 제6조 제2항)

- 개정안 요지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①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참가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됨

라. 취업 지원 사업 참가자에 대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 제공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2항)

- 개정안 요지 : 취업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생 략)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취업 지원 사업 참가자에 대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것으로, 제6조 제2항의 개정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각각 일자리 창출지원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므로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중복 제공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3: 타 지방자차단체 관련 입법 현황】

지역명	법 령 명	조 문	실행일자
양평군	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제15조	2025.12.31
홍천군	홍천군일자리창출지원조례	제9조제1항	2024.04.09.
횡성군	횡성군일자리창출지원조례	제10조제5호	2024.09.23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고용 및 불안정한 근로 여건 개선 등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2】

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의 제공은 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됨

라. 현재 타 시·군에서도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를 시행중에 있음【참고사항 3】

마. 다만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각각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므로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중복 제공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